

# 국내 油価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拡大方案



金炳培

(經濟企劃院物價總括課·行政事務官)

## 1. 序

현행 국내石油類価格은 정부가 결정하여流通段階別 최고가격으로告示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輸出入과 정유공장의新增設도 정부에 의하여規制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내油價決定 구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安定基金의 징수에 의한原油価格의 평준화와 其他生產費에 대한부분적 競争導入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石油類価格決定 및石油產業에 대한정부개입은 精油社의 低価原油導入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滞害하였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國際原油情勢에 弹力的·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適応力を 배양하는데 障碍가 되어 왔다.

이리하여 政府는 81년 11월 油價調整時에 国内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며, 經濟企劃院은 82년 업무계획에서 經濟活動의 能率化를 위한 각종 制度改善의 일환으로 価格自律化幅의 확대를 밝힌 바 있다. 本原稿는 국내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확대에 관한 그 배경과 구체적 方案,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個人的인 의견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 2. 背景

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확대 문제가 提起되게 된 背景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가. 民間主導의 経済運用方式의 指向

過去 수차례에 걸친 經濟開発計劃의 추진과정에서 資源의 配分과 民間企業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經濟成長에肯定的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介入<sup>①</sup>은,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否定的인 효과가 강조되는 등 그限界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介入幅의 점진적 缩少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른바 競争体制를 바탕으로 한 民間主導 経済運用에로의 전환이 그것이며 이는過去의 지속적 經濟成長을 가능케 했던 또 하나의 주요한 变数인 民間企業家의 창의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配分과 경제활동의 能率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 나. 國際原油市場의 安定 및 油價單一化的進展

國際原油需給은 79년의 제2차石油波動 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代替에너지開発等에 따른原油需要의 減退로 '81年中 供給過剩 현상을 보였으며, '82年에도 均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原油市場의 공급과잉 현상을 반영하여 產油국들은 81年中의 油價를 다투어 引下하였으며 81年 1月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OPEC臨時會議에서는 78年 이후 3年만에 자리적인 位置 및 油

註 : ① 司空臺, LP 존스, 經濟開発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KDI, 1981, p 320

質에 따른 합리적인 價格幅을 설정하는 油価单一化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油価의单一化로 基準原油価를 설정하여 국내 석유류가격에 반영하고 基準原油価와 導入原油価와의 差額을 安定基金으로 補填하여 주는 原油価平準化制度는 원칙적으로 볼 때,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며, 其他 生産費 뿐만 아니라 原油価에 对하여도 競争体制를 도입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되었다.

### 3. 国内油価決定에 있어서 競争力導入의 拡大方案

#### 가. 基本方向

表 1) 自由世界 石油需給実績 및 展望

区分	'79	'80	'81	'82
消費				
先進国	40.9	37.7	35.1	35.0
開途国	9.7	10.5	11.2	11.8
(合計)	(50.6)	(48.2)	(46.3)	(46.8)
		(△4.7)	(△3.9)	(1.1)
供給				
OPEC	30.7	27.2	24.5	24.7
非OPEC	20.2	21.1	21.2	21.6
(合計)	(50.9)	(48.3)	(45.7)	(46.3)
		(△5.1)	(△5.3)	(1.3)
在庫変動	0.9	0.4	△0.5	△0.7
統計的不一致	0.6	0.3	0.1	0.2

資料 : DRI, International Energy Bulletin, Jul. 1981

注 : ( ) 内는 前年对比 增減率, %

〈表 2〉 油価单一化에 따른 油種別価格 比較

油種	油質		'78末	'81.1月	'82.1月
	A P I	硫黃含量	(油価单一化時)	(原油価自律化時)	(油価再单一化時)
Arabian-Light	33.4	1.80	12.70 (100)	32.0 (100)	34.0 (100)
Iranian-Light	33.5	1.40	12.81 (101)	37.0 (116)	34.2 (101)
Kuwait	31.2	2.50	12.27 (97)	35.5 (111)	32.3 (95)
Zueitina	40.0	0.23	13.90 (109)	41.0 (128)	37.0 (109)

資料 : 석유개발공사, 주간석유뉴스, '79. 10. 29. P33, '82. 1. 13. P35

注 : ( ) 内는 Arabian-Light를 基準으로 한 指数임.

上述한 바와같이, 民間主導에 의한 經濟運用의 필요성 高潮, 國제원유시장의 安定 및 原油価의 单一化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의 国内油価의 결정은 현재의 政府에 依한 결정방식에서 精油社에 依한 自律의 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源泉의 需給安定과 公正去來秩序의 확립 등 有效競爭与件의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国内油価의 自律화는 精油社 및 관관부문의 受容態勢 확립과 補完對策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약 6개월 정도의 予告期間을 둔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일부 產油국에 대한 プレミ엄의 存在等 原油価单一化가 未治한 부문에 대하여는 原油価单一化의 진전상태와 國際原油市場의 동향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先行条件

油価의 自律화를 위하여는 몇 가지의 先行条件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原油 및 石油類 需給에 对한 政府의 적절적 関与의 축소로서, 各 精油社는 自社에 가장有利한 방식으로 原油 및 石油類 公급방식을 선택할 것이며, 정부는 原油導入先의 多元화, 石油需給의 안정 등 국가적인 次元에서의 간접적인 行割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精油社間 原油差異의 축소로서 精油社間原油差異가 클 경우, 原油가 낮은 企業에는 過多 利潤이 발생하고, 原油가 높은 기업에는 經營赤字가 발생하여 일부 精油社의 倒産 또는 精油產業의

(단위 : \$/배럴)

## □ 特輯：石油政策

寡占化 등 社会的·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精油社間 原価差異의 주요한 原因으로는 油価单一化의 未治, 精油社別 其他 生動費 수준의 差異가 있으며, 이러한 要件이 充足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對한 對応方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다. 段階的 推進方案

현재의 国内事件과 上記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国内油価의 自律화를 위한 단계적 試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一段階

国内油価를 精油社의 自律의 결정에 맡기되, 価格管理方式의 전환에 따른 혼란을 最小化하기 위하여는 당분간 行政指導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公正去來制度의理念에 맞추어 社別로 가격을 指導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安定基金에 의한 原油価 평준화제도는 첫째로, 產油국 프레미엄의 廃止等 보다 완전한 油価单一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시키는 방법과 둘째로, 產油국 프레미엄만 분리하여 安定基金에서 补填하고 残余의 原油価에 대하여는 平準화制度를 폐지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後者の 경우에 有利한 조건의 原油導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레미엄의 일정 부분(90% 또는 80% 등)만을 补填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導入原油에 對한 Incentive 및 Penalty制度는 原油価의 평준화제도와 같은 次元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二段階

油価自律화 실시후에 一定期間이 경과한 뒤, 油価에 대한 競争与件의 확립, 程度와 관련부문의 適応力等을 감안하여 油価自律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行政指導도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油価의 自律화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原油価单一化가 진전될 경우에는 安定基金에 의한 原油価 평준화제도도 廃止되어야 할 것이다.

### 라. 补完措置

国内油価決定에 있어서의 競争導入의 확대란 国

内생산자価格의 自律의 결정에 의한 競争導入 뿐만 아니라, 海外競爭力의 도입은 물론이고 石油製品의 生産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新規參入의 制限撤廃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쟁導入의 확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措置들은 消費者 선택의 幅을 拡大하고, 国内生産者와 需要者의 경영합리화 및 國際化를 촉진할 수 있어서, 価格自律화에 따른 효과적인 补完措置가 될 것이다.

#### ① 石油 輸出入의 自由化 및 關稅制度의 弹力的運用

石油의 輸出入은 현재 石油事業法에의거,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国内油価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輸出入의 自由化에 의한 海外競爭力의導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油種別 가격은 國際価格構造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有效競爭与件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石油製品에 대한 關稅率의 弹力的 운용도 주요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② 新規參入制限의 撤廃

石油精製業 및 販売業은 石油事業法에 의거 動力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油価自自律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生産 및 流通段階의 參入制限要素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 ③ 公正去來秩序의 확립

油価自律화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이 必須의이며, 이를 위하여는 精油社間의 価格談合, 精油社의 不當廉光나 優越의 지위의濫用等의 不公正去來行為의 排除를 위한 事後監視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라. 予想問題点에 대한 檢討

国内油価決定의 自律화를 포함한 경쟁도입의 拡大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 ① 關聯製品의 価格管理方式에 對한 檢토要

石油은 国内에 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에너지源으로서 관련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油価의 自自律화는 현재 特別法等에 의거 政府가 관리하고 있는 基礎石油化製品과 肥料等 石油多消費產業製品의 価格自律화 필요성을 提

高시킨다. 그러나 市場競爭原理의 경쟁 범위의 확대라는 観點에서 石油多消費製品의 價格 自律化는 관련부문에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肯定的인 方向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② 限界企業의 經營不実 可能

油價가 自律化될 경우에 공급능력이 需要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國內生產者間에 가격 경쟁이 深化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原價가 높은 限界企業의 經營赤字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油價自律化에 따른 불가피한 婦結로서 적정한 準備期間을 두고 시행한다면 限界企業의 原價節減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長期적으로는 限界企業을 포함한 精油產業 전체의 競争力を 제고시키고 國民經濟 전체의 利益으로 婦結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奧地의 石油需給蹉跌 發生 가능

현재는 均一輸送費를 製品油에 加算하기 때문에 精油社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流通段階別價格이 均一하도록 되어 있으나, 油價自律化가 실시될 경우에 精油社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하거나 輸送이 곤

란한 지역에서는 他地域보다 油價가 비싸지고 需給도 원활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道路拡充과 輸送施設의 발전, 현재의 需給狀況等을 감안할 때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 4. 結語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式에로의 전환은 점차로 產業活動의 각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길만이 우리 經濟가 날로 深해지는 國제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를 길임을勘案할 때 國內油價決定에 있어서 競争導入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다. 問題는 이에 따른 副作用을 어떻게 最少化하느냐 하는 것이다. 國民經濟의 구성요소인 生産자, 소비자, 정부는 그들 相互의 관계가 零合關係(zero-sum relation)가 아니고, 正合關係(Positive-sum relation)임을 認識하고 國民經濟의 長期적 成長發展을 위한 最善의 방책을 찾는데 공동의 努力を 다해야 할 것이다.\*

### □ 海外短信 □

## 인도네시아 작년도 原油生產實績 159万b/d

東南亞의 有力한 石油供給國인 인도네시아의 原油生產量이 增加一路에 있다. 스부로토鉱業·에너지相이 最近 밝힌 바에 따르면 昨年 1年間의 同國 原油生產實績은 日量 159万bbl이 되어, 1977年 이래 4年만에 增加를 보였다.

OPEC의 減產決議와 價格凍結決定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新規油田의 開発이나 増產努力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며, 政府關係者中에는 「'82年에는 目標의 170万bbl内外를 무난히 達成할 것이다」라고 举視的見解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增加로 바뀐 것은 同國政府가 1977年에 수립한 採查開發을 위한 稅制上の 特

惠措置와 Pertamina(國營石油會社) 鉱区의 開放이 큰 契機가 된다. 이에 對應하여 外國石油會社가 잇따라 인도네시아에 進出, 新規油田과 再開発油田에서의 生產이 本 軌道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鉱業·에너지相의 說明에 따르면, 현재 Pertamina와 生產分与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外國콘트렉터(都給業者)는 70社.

昨年 1年간에 12社가 새로이 契約을 체결하였다. 콘트렉터가 保有하고 있는 鉱区는 스마트라, 자바, 카리만탄(旧 보르네오) 등 68個所에 이르며 18個의 鉱区에서 石油生產에 착수하고 있다 한다.\*